



: 2017-10-19

## 광 주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7누3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단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156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8,682,9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6,69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6,69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8,682,960원,



지방교육세 4,412,320원, 농어촌특별세 3,621,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REDACTED]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지 1. 과세목록 과세물건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2016. 5. 10.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별지 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68,682,960원(= 본세 52,033,64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6,69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242,630원), 지방교육세 4,412,320원(= 본세 3,945,45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66,870원), 농어촌특별세 3,621,350원(= 본세 3,230,57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90,7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  
도로교통법 제123조에 따른 원고의 사업 중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사업이 원고의 사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고, 그 밖의 사업도 학술적인 조사 및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원고의 사업 대부분이 학술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고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학술연구 사업에 사용되었고, 원고가 게재·발표한 논문 및 학술연구실적 역시 다수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피고 등 과세관청은 원고를 학술연구단체로 인정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왔고,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3)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그 규



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등 참조), 어느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 1. 4. 법률 제3234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66조의7에 따라 1980. 5. 22.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원고의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5. 교통안전표지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간행 및 반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의 제문제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내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0.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원고는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원고의 목적 사업 중 '도로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으로 변경되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방송'이 원고의 목적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123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가 원고의 목적 사업으로 추가되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23조와 원고의 정관에 따른 원고의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sup>1)</sup>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3) 원고의 목적 사업 중 경영관리 등 부대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에 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 내역 및 2015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비율 <sup>2)</sup>
교통안전기술개선	25,835	25,492	17,382	26,377	95,086	22.7%
교통안전교육홍보	6,689	6,063	4,876	6,968	24,596	5.9%
방송프로그램제작	13,580	35,064	21,391	24,578	94,613	22.6%
운전면허시험관리	54,517	48,601	36,576	50,827	190,521	45.5%
교통안전연구개발	3,335	3,775	3,006	3,882	13,998	3.3%
합계	103,956	118,995	83,231	112,632	418,814	100%

(4) 원고의 2014년도 결산내역에 관하여 교통안전기술개선 사업 관련 집행액 173억 8,200만 원 중 ① 교통과학장비 위탁관리 항목이 124억 9,200만 원, ② 교통과학장비 검사 항목이 26억 1,900만 원이었다.

(5) 원고는 2017. 3. 29. 기준으로 특허권 67개, 디자인권 24개, 상표권 10개, 출원 소프트웨어 71개, 저작권 214개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연도별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소계			
1980~2007	1	1	1	3	1	25	29
2008	8	1	3	12	4	14	30

1)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3호에서 정한 목적사업으로, 원고의 정관 제5조 제3호는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으로 되어 있다.

2)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2009	4	8	1	13	11	13	37
2010	4	0	4	8	3	46	57
2011	7	8	1	16	5	30	51
2012	12	7	0	19	13	26	58
2013	10	0	0	10	5	32	47
2014	7	3	1	11	15	29	55
2015	12	0	0	12	9	0	21
2016	4	0	0	4	5	0	9
합계	69	28	11	108	71	215	39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의 요건 중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단체'라는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학술의 연구 및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123조와 원고의 정관에 따른 원고의 목적 사업에는 학술의 연구 및 발표에 관련된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외에도,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 등 학술의 연구 및 발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 내역 및 2015년 예산 내역에 관하여





경영관리 등 부대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의 총사업비 중 학술의 연구 및 발표와 관련이 없는 운전면허시험관리 사업비가 45.5%, 방송프로그램제작 사업비가 22.6%를 차지하는 반면, 학술의 연구 및 발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통안전연구개발 사업비는 3.3%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결산 내역 기준으로 교통안전기술개선 사업비 중 교통과학장비 위탁관리비와 교통과학장비 검사비가 86.9% $[(124\text{억 } 9,200\text{만 원} + 26\text{억 } 1,900\text{만 원}) / 173\text{억 } 8,200\text{만 원} \times 100]$ 를 차지하는 등 교통안전기술개선 사업비에 관하여도 그 대부분이 학술의 연구 및 발표와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1980년부터 30년 넘는 기간 동안 취득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학술의 연구 및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전신인 도로교통안전협회는 1988. 1. 13. 내무부장관에게 자신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는데, 내무부장관은 1988. 2. 4. 도로교통안전협회에게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도로교통안전협회는 국세청에 자신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는데, 국세청은 1990. 3. 7. 도로교통안전협회에게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3) ■■■광역시 ■■■구청장은 2007. 5.경, ■■■시장은 2016. 7.경, ■■■시 ■■■구청장은 2016. 10.경 각각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4) ■■■시 ■■■구청장은 2016. 7.경, ■■■광역시 ■■■구청장은 2016. 9.경 각각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전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는 내부무장관의 1988년 질의회신, 국세청의 1990년 질의회신이 존재하나, 그 이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고의 목적 사업으로 2001년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방송', 2010년 '운전면허시험의 관리'가 추가되었고, 추가된 목적 사업이 원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에 앞서 살핀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내부무장관의 1988년 질의회신, 국세청의 1990년 질의회신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설령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광역시 ■■■구청장, ■■■시장, ■■■시 ■■■구청장은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피고와 ■■■시 ■■■구청장, ■■■광역시 ■■■구청장은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등 원고가 학술연구단체로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에 관하여 과세관청마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 단서가 신설되어 2018. 1. 1. 시행예정인데,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단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인 원고가 개정 전에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학술의 연구 및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이면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단서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는 원고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3)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4.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산출세액과 같은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판단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였으나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로 또는 특정 필지의 공유지분별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수 금액의 차이로 별지 1. 과세목록 기재 취득세의 본세와 일부 차이나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1. 과세목록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6,69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6,690원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2017-10-19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최현정

              판사      한종환



: 2017-10-19

### 1. 과세목록

순번	과세물건	면적 합계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농어촌 특별세 (원)		합계 (원)	비고 (신고서)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	리 답 1,772㎡	1,772㎡	6,751,320	1,350,260	980,290	450,080	65,350	450,080	65,350	10,112,730	갑20-1~6
2	리 구거 91㎡	210㎡	1,476,190	295,230	186,440	147,610	18,640	73,800	9,320	2,207,230	갑20-7
	리 구거 36㎡										
	리 철도용지 83㎡										
3	리 답 1,189㎡	3,313㎡	13,696,930	2,739,380	1,676,500	913,120	111,760	913,120	111,760	20,162,570	갑20-8
	리 답 1,845㎡										
	리 답 279㎡										
4	리 답 37㎡	37㎡	202,130	40,420	23,890	13,470	1,590	13,470	1,590	296,560	갑20-13
5	리 하천 75㎡	204㎡	736,840	147,360	84,660	73,680	8,460	36,840	4,230	1,092,070	갑20-14~16
	리 하천 12㎡										
	리 하천 16㎡										
	리 철도용지 46㎡										
6	리 하천 55㎡	363㎡	1,993,710	398,740	229,070	132,910	15,270	132,910	15,270	2,917,880	갑20-17~20
	리 답 165㎡										
	리 답 33㎡										
7	리 답 165㎡	2,932㎡	12,084,660	2,416,930	1,250,760	1,208,460	125,070	604,230	62,530	17,752,640	갑20-21
	리 외 6필지										
8	리 답 1,237㎡	2,416㎡	15,091,860	3,018,370	1,811,020	1,006,120	120,730	1,006,120	120,730	22,174,950	갑20-9~12
	리 답 640㎡										
	리 답 132㎡										
	리 답 242㎡										
	리 답 165㎡										
합계			52,033,640	10,406,690	6,242,630	3,945,450	466,870	3,230,570	390,780	76,716,630	
			68,682,960			4,412,320		3,621,350			





## 2. 관계법령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각 개정되어 2018. 1. 1. 시행예정인 것)

####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 ■ 지방세기본법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7-10-19

-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